새길교회 정관

제 1 조. 명칭

본 교회는 새길크리스천교회(제자회)—약칭, 새길교회— (Saegil Christian Church [Disciples of Christ])라 칭한다.

제 2 조. 사명

본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언제나 새롭게 확인하고, 예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.

- 1. 교인과 목회자가 함께 꾸미는 교회를 지향한다.
- 2. 건전한 신학의 배움터가 된다.
- 3.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룬다.

제 3 조, 조직

본 교회는 교인총회, 운영위원회, 예배, 교육, 선교, 친교, 재정부를 둔다.

제 4 조. 교인 총회 (The Congregational Meeting)

- 1. 총회는 매년 1월에 예산안을 채택하고,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운영위원을 인준한다.
- 2. 총회의 회장과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.
- 3. 모든 정기 혹은 임시총회는 모임 전 2 주간 서면과 정규 주일 예배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,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를 표기해야 한다.
- 4. 총회 투표권은 새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지난 6 개월 이상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교인으로 한다.
- 5. 총회의 정족수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로 하며, 모든 의제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조. 운영위원회 (The Board Meeting)

- 1.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다룬다.
- 2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서기를 포함한 운영위원들, 그리고 직무상 자격을 가진(exofficio) 목회자들로 구성한다.
- 3. 운영위원회는 매년 운영위원을 교인총회에 추천한다.
- 4. 운영위원의 임기는 3 년 연차제(3 년조, 2 년조, 1 년조)로 한다. 결원시 후임자의 임기는 해당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새길교회 정관

- 5. 운영위원회는 예배, 교육, 선교, 친교, 재정부장을 선출한다.
- 6. 운영위원회는 정기모임을 갖는다. 임시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혹은 교인의 25%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6 조. 목회자

본 교회의 목회자는 크리스천교회(제자회)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. 정관 수정

이 정관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참석자의 2/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 제안된 정관수정안은 총회 2 주 전부터 주일예배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

2008 년 12 월 14 일 제정 2011 년 1 월 30 일 개정 2015 년 1 월 25 일 개정